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

금융회사명 : ㈜상상인증권 (인)

(기준일 : 2026년 10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10월 01일 현재)

번호	상품유형[주]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투자성	위탁자예수금	위탁매매(주식, 채권) 계좌의 위탁자예수금			
2	투자성	위탁자예수금	RP계좌의 위탁자예수금			
3	투자성	위탁자예수금	CP계좌의 위탁자예수금			
4	투자성	위탁자예수금	CMA계좌의 위탁자예수금			
5	투자성	위탁자예수금	해외주식계좌의 위탁자예수금(외화)		2024.12.31	
6	투자성	수익자예수금	수익증권계좌의 수익자예수금			
7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00.12.31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
8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00.12.31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
9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00.12.31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
10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00.12.31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
11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장기증권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02.12.31	
12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02.12.31	
13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적립식증권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09.02.04	
14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14.12.31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15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생계형증권저축의 저축자예수금		2014.12.31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16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저축자예수금		판매중단	판매중단
17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자예수금			
18	투자성	저축자예수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의 예수금		2024.12.31	

주)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붙임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10월 01일 현재)

번호	금융회사명	상품유형[주1)]	상품종류[주2)]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비고
1	해당사항없음					

주1)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주2) 보험,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상상인증권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